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2018. 05. 16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목차

01 비전 수립 취지와 배경

02 「문화비전2030」 가치와 방향

03 「문화비전2030」 체계도

04 9대 의제별 대표과제

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2.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3. 성평등 문화의 실현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6. 지역문화분권 실현
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05 실행력 제고 방안

사람

이 있는

문화

01 **비전 수립 취지와 배경**

01 |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 경쟁·효율을 중시하는 일 중심의 사회

- 과도한 노동시간, 자유시간 부족, 임금격차 등으로 문화 여가시간은 물론, 기본 휴식시간도 확보하지 못해 삶의 만족도 저하

* '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 2위 (1위 멕시코 2255시간, 2위 한국 2069시간)

*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기준 5.8점,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 '일'과 '생존' 외에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문화 활동에 관심을 쏟을 시간이 부족
- 일 중심의 사회구조는 창의적 사고 저해

◀ 상호 신뢰의 부족

-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 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상호 신뢰' 부족

* 우리사회 포용영역과 신뢰영역은 10점 만점에 각각 3.79점, 3.8점으로 과거 대비 크게 악화
(「사회통합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년)

- 경제 양극화에 따른 소외, 지위·위계 등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세대·젠더 간 갈등 등의 문제 상존

*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화다양성 정책필요 우선순위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75%), 세대 간 갈등(69%), 성별 불평등(65%) 순(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1 |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 기회이자 위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사회 혁신의 주체가 예술가·혁신가 등 소수에서 모든 개인으로 확장
 - 모든 개인이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고, 무한히 연결 가능한 관계망을 통해 다양한 실험 가능해짐
 - * 「기술 변화는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새로운 논리들을 등장하게 하고, 문화적 표현들의 다양성을 촉진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기술자동화로 단순노동이 사라져 창의적 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소외될 위기
 - 창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
- 인간의 육체·지식 노동이 인공 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됨에 따른 인간 본연의 존엄성 상실과 삶의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존재

기존 문화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대응

- ▶ 문화는 개인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사회 많은 사회갈등을 치유하며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 ▶ 예술·체육·관광·콘텐츠 등 정책의 범위를 개별화·협소화시켜 사회 현안과 미래변동의 이슈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에 종속
 - ☞ 사람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혁신의 에너지를 담은 장기적인 문화비전이 필요

02 | 문화비전 왜 필요한가?

◀ 진보·보수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비전이 필요

- 지난 20년 동안 문화정책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치적 이념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반복
- 진보·보수라는 낡은 이념적 잣대를 넘어서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문화의 역할이 필요

◀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장기 문화정책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기술혁신과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문화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응
-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문화·예술·스포츠·관광 교류가 남북 평화 통일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Me Too)운동’을 계기로 우리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

- 예술인의 창작의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고, 정치이념의 견해 차이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문화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
-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평등한 관계를 위해 문화예술계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

◀ 문화의 기본 가치에 충실한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

- 문화의 고유한 가치들이 사회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본 문제의식이 절실한 시대
-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문화의 기본가치에 충실한 문화비전을 제시

03 | 2030년, 우리 삶을 바꾸는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로

개인의 생각과 권리를 존중하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 젠더불평등에서 젠더평등의 문화로

젠더폭력에 대응하고 젠더감수성을 중시하며 젠더평등의 문화환경 마련

▶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로

모두가 창의적인 예술가·혁신가가 될 수 있는 사회

▶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쉼과 여유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내재된 창의성을 회복

▶ 갈등과 혐오에서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공존

▶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각 지역의 문화적 분권과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분권형 문화정책으로 이행

▶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창작·유통·향유 각 단계에서 연계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지속이 가능한 생태계

사람

이 있는

문화

02 「문화비전2030」 가치와 방향

◀ 개인의 자율성 보장

-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자신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

* 자율성의 의미 : 개인의 권리와 생각이 타인 · 집단 · 국가로부터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

- 국가는 개인이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문화 기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각자의 개성을 문화 활동을 통해 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다양성 실현과 창의성 확산의 토대
 -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다양한 문화 존재 가능
 - * 「문화다양성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표현의 자유 · 언론의 자유 등), 문화적 표현을 선택할 개인의 능력이 보장될 때에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UN 문화다양성 협약)
 - 서슴없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 · 다양화된 환경이 없는 한 창의성 중심으로의 사회발전은 어려움
- 개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의 역할이 중요
 - 문화예술인은 사람들이 향유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는 주된 주체
 - 국민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역량을 키우려면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중요

의제 0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의제 02. 문화예술인 ·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의제 03. 성평등 문화의 실현

◀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정체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화적 활동·표현들이 다양한 속성의 공동체들 내에서 자유롭게 발현·존중되는 것

* 다양성의 의미 : 성별, 세대, 지역, 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정치적 견해 등의 문화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것

- 국가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 활동이나 문화유산이 경제적 가치나 특정한 정치적 입장 등에 의해 획일화되는 것을 방지
- 국가는 창작과 생산, 전파와 유통, 접근과 향유로 연결된 생태계에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의 종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
-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은 서로 다름과 차이를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며 공존하고 협력하는 사회 기반을 통해 가능
 -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
 - 다양한 문화는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을 통해 구현, 획일적이지 않고 창의성이 자유롭게 꽃 피울 수 있는 조건이자 토대
- 공동체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
 -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발현·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문화에 쉽게 접근하고 능동적인 문화 활동과 참여가 가능한 지역문화분권 실현이 필요

의제 0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의제 0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의제 06. 지역문화분권 실현

◀ 사회의 창의성 확산

- 사회 전반에 문화적 상상력과 역량을 확산시켜 4차 산업혁명 · 통일 · 일자리 변화 등의 미래 의제와 저출산 · 교육 · 복지 · 주거 등의 사회의제에 대응
 - 국가는 창의성을 토대로 산업 혁신이 이뤄지도록 기술적 ·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문화와 기술, 문화와 관광, 예술과 과학 등의 융합 촉진
 - 국가는 각 개인과 집단이 교류 · 협력하면서 자유로운 상상과 실험이 가능한 공간과 계기를 제공하고 상상의 결과물이 문화자원과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는 대안 생태계 조성
- 문화비전2030은 창의성의 개념을 사회 혁신의 중요한 동력으로 시민적 창의성까지 확장
 - 종래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는 예술적 창의성과 산업 혁신과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고안적 창의성에 집중
- 창의성은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능력이자 잠재력으로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
- 영역 간 융합, 집단 간 소통, 협력과 통합을 통한 문제해결 모두 사회 전반에 창의성이 확산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의제 0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의제 0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의제 0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01 | 3대 가치 · 9대 의제 실현을 위한 문화비전의 원칙

▶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정책

- 국민의 삶에 가장 밀착하는 문화정책, 일상을 문화로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정책

▶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

-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함께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
- 문화비전을 위한 문화계 현장과 전문가, 공무원, 일반 시민들 간의 협치가 문화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

▶ 지속가능한 문제해결을 위한 개방형·진행형 문화비전

- 문화비전을 담은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보고서로서의 위상을 가짐
- 완성된 것이 아닌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진행형 문화비전 수립의 원칙을 견지

▶ 2030년까지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 문화정책

- 당장 필요한 문화정책 수립의 수준과 위상을 넘어서 국가문화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문화정책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세변화,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 이후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혁신을 위한 힘

**문화가 삶을 바꾸고
활력을 주는 문화정책**

사람

이 있는

문화

03 문화비전2030 체계도

비 전

사람이 있는 문화

가 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방향
/
9대 의제

1. 개인의 자율성 보장

-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② 문화예술인 ·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 ③ 성평등 문화실현

2.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⑥ 지역문화분권 실현

3. 사회의 창의성 확산

-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04 9대 의제별 대표과제

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2. 문화예술인 · 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3. 성평등 문화의 실현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6. 지역문화분권 실현
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0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의제

배경



▪ 사람은 삶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권리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 2001)

01 | 문화권 확산

◀ (공감대 형성) 문화권의 중요성을 공표 · 공유하는 ‘문화권 2030 선언’ 추진

-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초로서 문화권 강조
- 개인의 문화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선언

◀ (제도화) 헌법에서 문화권 보장 강화, 국가 문화정책의 기초로 정립

- 헌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개인의 문화권을 반영
 - * (개헌안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
-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허가 · 검열 금지를 명확화
 - * (개헌안 제20조 제1항) 언론 ·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

◀ (구체화)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 전면 확대

■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국민이 참여와 향유의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정책

* 나도 예술가, 3W 프로젝트

- ▶ Whoever: “누구든지 일상에서 예술가 되기” (모두가 누리는 생활예술의 확대)
- ▶ Whenever: “언제든지 예술로 즐거운 삶”(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 Wherever: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한 문화공간”(더 가까운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 * 보는 콘텐츠에서 만드는 콘텐츠로
- ▶ 청소년들을 위한 콘텐츠 창의력 학교 운영(“나도 영화감독”, “나도 웹툰작가” 시리즈 프로그램)
- ▶ 우리 모두 손재주 장인되기: 핸드메이드, 메이커스 문화 공방 지원 확대
- ▶ 주민이 미디어의 주인이 되는 마을미디어 사업 전국적 확대

■ 관광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정책

- ▶ 여가 가능시간 확대
- ▶ 모두를 위한 관광시설·프로그램 개선 (청소년층, 노인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 ▶ 모두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외국인, 장애인, 노인층,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 가정 등)
-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관광 (지역마케팅조직(DMO), 관광두레, 공정관광 등)

■ 기본권(행복추구권, 건강권, 문화권)으로서의 스포츠 정책

- ▶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복지
- ▶ 평생 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및 지도자 제공)
- ▶ 생애주기별 체육프로그램 제공 (3세부터 100세까지 체육으로 건강하게 살기)
-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기반 조성



02 | 문화권 실현을 위한 여가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시간) 근로자의 휴가 권리를 확대하여 일과 삶의 균형 실현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 관련 법 제정, 공휴일 전후 연차 사용 의무화 추진 (관계부처 협의)
 - * 현재 민간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 중
-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확대('18년 79개 → '30년 1,000개) 및 정착
 - * 선정된 여가친화기업에게 혜택 제공(찾아가는 직장문화배달 등)

◀ (거리) 근린 생활권 내 생활문화기반 시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 친화형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확대
 - * 문화놀이터 : 낙후·폐쇄된 기존 놀이터에 문화를 입혀 가족 친화형 놀이터로 재조성, 낙후지역 중심으로 조성 시작 ('30년 100개)
-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주거 인접 시설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인문 프로그램 지원
 - * 인문강연, 인문융합프로그램, 인문동아리 운영 등 지원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주도형 '우리 동네 특화 도서관' 도입
 - *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
- 집에서 10분 내 운동 환경 제공 위한 신규 시설 조성·기존 시설 활용 확대
 - * 거주지 인근 간이 체육시설 조성,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교육부 협의), 생활체육지도자 시군구 단위 확대 배치 등

◀ (여건) 생애주기별 · 계층별 문화 여가활동 지원

- (유 · 아동 부모) 문화여가 중 아이돌봄 제공으로 부모의 여가외출 지원
 - * 국공립 문화시설 내 아이돌봄공간 확대 등
- (직장인) 퇴근 후 ·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 · 프로그램 확대
 - * 업무지역 인근 국공립 문화시설 야간개방 연장, 심야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 (중장년) 또래와의 교류 등 관심사와 신체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 조성
 - * 실버여행학교(노년) :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문화센터와 연계, 여행과 평생교육을 결합
- (장애인)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설립, 일반 영화관 내 장애인·비장애인 영화 동시관람 시스템 구축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18년 29개 → '30년 220개/누적),
시·군·구 단위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확대('18년 15개소 → '30년 50개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8년 577명 → '30년 3,000명)

◀ (비용) 여가 향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아동) 어려서부터 문화에 친숙해지도록 문화 체험기회 제공
 - * 첫걸음(New Step) 문화 카드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문화카드 제공
- (청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체험 할인혜택이 포함된 통합관광교통카드 제공
 - * 청년통합관광교통카드 우선 도입, 타 계층 확대 도입 추진
- (중소기업 직장인)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추진('18년 2만명 → '22년 연간 10만명) 및 민간 중심으로 제도 정착
 - * '18년부터 마중물 형태로 한시 지원, 향후에는 간접 지원 형태로 전환 유도
- (노인) 저소득층 고령자(8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이동 및 동행자에 활용토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추가 제공 추진

03 |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지역 문화예술교육 강화)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 반영
 - *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센터 지정 방안 마련 등
- 학교예술강사 등 문화예술 교육가의 지위와 권리 강화로 교육 안정화

◀ (교육접근성 제고)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
 - * 문화예술교육단체, 프로그램, 시설 현황 및 타 부처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용 포함
- 기존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기능 및 역할 강화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상주 등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을 통해 동아리의 역량 강화 및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로 연계하여 시민예술가 양성
 - * '18년 700개, 8개 지역 지원 → '30년 1,500개, 17개 지역 지원
- 중고등학생의 대중문화·뉴미디어·뉴스 수용 능력 교육 도입 및 성인대상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확대* 운영
 - * 평생교실 '18년 106개 → '30년 170개

◀ (사회적 역할 확대)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군 부적응병사,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개인에게 적합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세대 갈등,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추진

04 |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고양

◀ (인문저변 확대) 생활 속 자생적 인문 확산 기반 구축

- 인문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계층 · 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인문프로그램 실시
 - * 찾아가는 인문 세대공감(독거노인, 양로원 등),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콘서트(직장, 공단), 찾아가는 인문교실(군부대,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 특화. 확대
- 인문·철학의 교류·소통·확산 거점공간으로 세계인문학교 운영 추진
 - * 국내외 석학·명사들의 강연. 교류와 학술행사를 통해 새로운 인문담론 형성과 확산

05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지역 생활문화 증진) 공간 중심에서 공간과 강사 지원 중심으로 전환

- 문화 동아리 10만개('18년 현재 약 3만 2천여개) 양성을 위한 단계적 지원
* 발표, 교류, 공간, 강사활동 지원 등
- 1 시군구(읍면동) 1 스포츠클럽 추진 ('18년 63개 → '30년 3,500개)
*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법 마련 및 지자체 조례제정 유도, 지역사회와 스포츠클럽 간 연계 강화
- 게임·영화·웹툰 등을 직접 창작·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누리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이 모듬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창작·향유 프로그램 구성
* '18년 2개소인 콘텐츠 누리터를 광역 지자체별 조성 추진
- 지역서점 연계하여 공공도서관 내 '(가칭)사람을 잇는 작은 책방' 조성
* 책과 연계한 문구, 문화 콘텐츠 상품 판매 및 강연, 행사 등 개최

◀ (정책 지표 개선) 지역 문화의 수요측면 보강 및 정책 추진 연계

- 공급 지표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지역문화지수'에 수요부문을 결합하여 '지역문화균형지수'로 확장·모델 개발
* 공급(시설, 인력, 기관, 프로그램 등), 수요(문화향유 수준, 만족도 등)
- 지역 간 문화여건을 진단하고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맞춤형 지원 등 정책을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2년 단위 조사로 정례화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



02

의제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배경



-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01 |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권·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확충

◀ (제도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및 예술가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해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현장·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 마련('18년, 국회·정부 협업) → 법 시행('19)

◀ (민관 협치 강화) 현장과 함께 문화예술 노동환경 지속 개선

- 예술의 본원적 가치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에 의거,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노동권을 보장하는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가칭)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과 연계, 예술가의 권익침해행위 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안) 심의·의결

02 | 문화분야 공공기관 및 지원체계 혁신

◀ (자율성 보장)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문화정책 기획 조정 및 협치 운영 역할 확립

* 문화비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 중장기적으로 한국예술위원회 등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지속 마련

* 예술지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강화 확대하기 위해 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체계, 의사결정,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전면적인 혁신 계획 수립

◀ (문화행정 혁신)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 · 예술가의 협치 기반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구조 개혁과 협치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
*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와 책임 등
- 중기재정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예술인복지 정책 등에 문화 · 예술계 참여 확대

03 | 문화예술 · 체육인 복지 지원

◀ (예술인 복지 강화)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 직업교육, 타 기관(복지부·고용부·지자체 등) 사회보장 제도 안내 및 신청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 패스 제공, 예술인의 창작·주거 연계 확산 지원, 예술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매개자 교육, 심리상담·의료비·자녀돌봄센터 운영 등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 ('19~)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운영

◀ (체육인 복지 확대) 체육인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지원 강화

- 스포츠 지도인력의 근무 · 수당 체계 등 근로복지 개선안 마련, 효율적인 지도자 평가시스템 도입 등 근로여건 개선
- 체육인 복지 전담기구 지정, 체육인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진로지원 등 복지 지원 강화(체육인복지법 제정)

03 성평등 문화의 실현

의제

배경



- 문화분야의 성비특수성(여성비중 70% 이상)에도 불구하고 만성화된 성차별, 위계적 성폭력 만연으로 여성위험적 생태계를 초래하고, 이러한 생태계가 성차별적 문화표현과 활동을 조장하는 악순환 심화
- 문화생태계 전반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적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 촉진

01 | 성차별 · 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법제 마련) 문화계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 구제 등 법제화 추진

- (법제화) 현장 문화예술인, 종사자, 전문가 등의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가칭)「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또는 개별법 보완 등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성차별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징계, 공직 및 공적 지원에서의 배제, 피해자의 직업활동 및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보호·지원 등

◀ (실태조사·피해자 보호) 분야별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활용 및 피해자보호·지원센터 설치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별로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 분야별 사업장/비사업장, 각급학교 및 대학(대학원 포함), 관련 단체, 공공 및 민간의 관련 기관·시설,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 수립·시행 조직·부서·산하기관 등 대상으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법적 근거 마련)
 -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 모니터링, 평가 등 환류체계 구축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적 성차별·성폭력 신고 및 피해자 보호·지원센터 설치
 - *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분야별 종사자, 관계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 및 협의
 - * 단순 신고기능을 넘어 적극적 피해자 보호·지원 기능 중심, 분야별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마련, 피해자 법률지원 등

02 | 성평등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혁신

◀ (성평등 계약문화) 분야별 표준계약서 성폭력 관련 조항 마련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 관련 법률에 성평등 계약 관련 근거 마련 및 (가칭)‘성평등 계약지침’제정
- 표준계약서에 (가칭)‘성평등 계약지침’ 관련 조항 반영
 - *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범위 확장 및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명시적 반영 의무화

◀ (공적 배제) 성차별·성폭력·위계폭력의 공적 배제 및 규제

- 성차별·성폭력·위계폭력 가해자 및 신고대상자에 대한 공적 지원, 공모사업, 심사·강의 등 참여 배제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의 국공립 기관·단체·시설, 각급학교 및 대학의 임직원·교원 채용 배제, 징계 규정 등 강화(교육부 등 협력)
 - * 개별 기관 등의 자체 규정 마련 의무화(임직원 채용·평가기준 반영, 징계 등)



◀ (성평등 고용실현 등) 정책의사결정 및 정책사업에서 성평등 제도화

- (여성대표성)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 공공기관, 협·단체, 국공립 시설·단체, 각급학교·대학 등에서 성평등한 정책의사결정 및 실행 제도화
* 분야별 성별대표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 채용 및 승진에서 여성대표성 실현
- (성평등 쿼터제) 공적지원, 공모사업, 국공립 문화시설 등의 여성 관련 전시·공연 프로그램 등 비중 확대로 성평등 문화 정착
- (성평등 고용)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의 성평등 고용 실현, 여성인력 처우개선 및 권한 강화

◀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기반 구축] 전담조직·재원 확보

- 성평등 문화정책(문화생태계의 성평등 실현 및 문화정책을 통한 성평등한 사회혁신)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민관협치를 위한 정책결정기구(위원회) 설치, 전담 지원기관, 재정 확충 등 추진

03 | 성우호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

* 남성·여성 등 특정 성에만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배려 하는 것

◀ (성평등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등 각 분야 여성활동 활성화 지원

- 각 분야별 여성 예술가, 여성 체육인,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직군별 경력단계 및 생애주기조사 등 기초 정책연구 실시
- 여성의 전문적·직업적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 확대

◀ (여성문화 재평가·인식 제고) 여성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 제고

- 여성 문화·체육 활동 관련 각종 문화적·역사적 유산, 자료 등의 발굴 및 연구·비평 활성화 지원(교육부 협력)
- (가칭)‘여성 역사·문화 아카이브/컬렉션’신설 및 운영
- 각급학교 및 대학, 예술학교 및 대학 관련학과 등의 정규 교과목에 여성 예술가·체육인의 업적과 활동, 여성주의적 비평·평가 등 반영 추진(교육부 협력)

0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의제

- 배경
-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과 범위, 정책체계 및 원칙 등 재정립
 - 차이와 공존에 기초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

01 |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 (정책 범위 설정) 문화다양성 개념과 정책 위상 정립

- 사례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핵심적 범주 설정
 - * 나이, 종교, 장애, 젠더,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다양성 요소에 대한 법률상 범주를 검토
- 사회 통합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관점에서 정책 개념 창출
 - * 소수자를 사회적 차별·혐오 대상, 복지·시혜 대상, 치료의 대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방향 전환, 장애인의 문화 표현 및 체험 기회 확대,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등
- 한국사회 문화다양성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 * 매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지수화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수준을 제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

◀ (교육 실시)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양성, 직장 및 학교에서 교육이수 의무화 등 추진
-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에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확산도 포함
 - * 문화예술교육 교과과정 개발 등

◀ (다양성 예술 증진)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다양한 예술 지원

- 장애, 젠더, 지역, 인종, 종교 등 문화정체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비중 확대

02 |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 (지역어 보전) 지역어의 보전 및 진흥으로 언어문화 다양성 증진

- 지역어의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지역의 특색 있는 언어문화를 담은 지역어 자료 저장체계를 구축 보존하고 연구 및 전시에 활용
- 지역어 사용 의식 및 환경 실태 조사, 소멸 위기의 산간 도서 지역 어휘 조사 채록

◀ (특수언어 위상강화) 농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수어 진흥

- (수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언어로서 한국수어 위상 강화
 - * 한국수어교원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한국수어사전 편찬, 한국수어 문화정보 구축 등
- (점자) 한글과 같은 효력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문자로서 점자 위상 강화
 - * 점자규범 정비, 점자 전문가 양성, 점자출판시설 지원, 점자 교재 개발 등

03 | 전통문화의 보호 및 현대화

◀ (추진 기반 마련) 전통문화 정책의 안정성 확보 및 체계적 추진

- 전통예술에 특화된 연습장, 실험무대, 공방 등 창작과 유통의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의 자생력 강화 지원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모니터링, 조정, 평가 등을 통해 통합 관리

◀ (전통문화 자원 발굴) 지역 전통문화 현황 조사, 발굴 및 활용

- 국학 자료의 수집·보존으로 전통 인문자산의 소멸을 방지하고, 연구·보급 및 창작소재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해 활용 유도
- 지역의 전통문화 양식과 문화유산 자원을 공연 및 창의적 콘텐츠로 활용

◀ (전통문화 향유 증진) 전통문화·공연 향유 프로그램 확대

- 매월 전통문화 가치와 지혜와 연계된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사업화하여 세시풍속의 확산 및 일상화 추진
- 지역 마을공동체 민속잔치·마을잔치 활성화로, 마을 공동체 문화 재현·전통예술 소재 보존
- 전통예술의 대중화, 현대화를 위한 창작활성화
-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영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 전문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추진

◀ (문화재 보존) 현장·지역 중심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전승

- 항일독립문화유산, 풍납토성 등 지역의 문화재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자원화 추진
- 매장문화재 발굴·지표조사에 대한 국민부담 완화 및 조사 품질 제고
- 정보통신기술, 최신방재기술을 활용한 현장별 방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 문화재 관련 디지털 도면, 시청각물, 3D 데이터 등 아카이브 수집·관리를 통해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정보 활용기반을 내실화

04 |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관광 정책 추진

◀ (공존하는 관광정책 추진) 상호 이해, 다문화 배려 서비스 구축

- 상호 문화이해·문화수용을 위한 관광교류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문화권을 배려하는 관광서비스 · 관광안내 · 관광인프라 보완
-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축제 · 관광 프로그램 개발확대

05 |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 · 추진체계 정비

◀ (기본법화)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원칙으로 정립

- 현행 「문화다양성법」을「문화기본법」과 통합하거나 확대 개정하여 문화다양성의 기본가치를 법률 체계로 강화

* 현행「문화다양성법」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실무와 국민인식 제고 수준

◀ (문체부 역할 강화) 정책 총괄부처로서 문체부 책임성 제고

- 문체부를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부처로 명확화
-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 위원회 심의과정 공론화, 심의결과의 정책반영, 반영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화 등

◀ (지침 마련)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실행지침 마련 · 이행

- 문화정책 및 지원사업 전반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통지침 마련,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실천

* 지원사업 운영주체, 자격요건, 사업운영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 실행규정 등

05

의제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배경



- 문화 가치와 경제 가치가 서로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
- 다양한 문화예술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01 | 문화예술 · 콘텐츠시장 공정 환경 조성

◀ (실효성 제고) 표준계약서 확대 및 서면계약 의무화

-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여부 조사권 신설
-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서면계약(근로계약) 체결 준수 여부 현장 점검 정례화(관계부처 협의)

◀ (신고 용이성 확대)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 기능을 강화,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상담,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 및 심리 상담까지 연계 체계 확대
- 예술분야 협회 · 단체를 통한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 확대 추진

◀ (기반 조성) 콘텐츠시장 공정성 확대를 위한 법 제도 등 기반 마련

- 문화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 추진
*「(가칭)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등
- 불공정 행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실질적 개선 유도
- ‘스크린 점유 상한제’ 도입 · 스크린 독점 해소 · 극장부율제 조정 등 검토,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적극 대처

◀ (기준 마련)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및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합리화

-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 기준 마련
 - * 장르별 도입 : 미술창작대가기준 마련('18년) → 공연 등 확대('19년~)
 - * 단계적 추진 : 국·공립기관 등 공공분야 시범 적용 → 법제화
- 디지털 음원 수익구조 개선방안 마련, 교과도서보상금 단계적 인상 등 저작권 수익 징수 · 분배기준 강화

02 | 공정한 스포츠 문화 형성

◀ (인식 개선) 스포츠 공정 인식 개선 및 정착

- 스포츠 가치의 핵심인 '공정 경쟁', '존중' 캠페인 활성화
- 전국규모대회 개최 시 가맹단체, 선수, 지도자, 심판, 학부모 대상으로 스포츠 가치에 대한 교육 · 홍보 강화

◀ (기관 설립) (가칭)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 스포츠 공정성 확립, 스포츠인 인권 보호와 신장,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 공정업무 총괄기관으로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스포츠 비리 조사 · 징계 심의 등을 담당하고, 스포츠 분야 분쟁을 조정 · 중재하며, 스포츠 공정·인권 교육 · 홍보사업 실시

03 | 예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

◀ (지원 다변화) 예술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원방식 개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지원 공모사업에 예술다양성 지원 분야 신설
 - * 기존 예술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와 비주류 예술을 체계적으로 지원
- 다양한 예술 장르 간 융합 창작 실험이 실제 제작과 유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기능 혁신) 공공 공연시설의 기획 기능 강화

- 공공 공연시설이 상주단체 및 민간단체(기획사 포함)와 공연 등을 공동제작하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
 - * 공공 공연시설 간 관계망을 활용한 공동 제작·구매·배급 활성화
- 문예회관 운영방식을 기획·제작 중심으로 전환, 각 지역 문예회관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계획 수립·운영
 - * 운영계획을 개선하고 민간 협력사업을 개발한 사례에 혜택(인센티브) 제공

◀ (집중 육성) 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도입

- 발전 가능성 있는 공연예술단체*를 다년간 지원하여 단체 자생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발판 마련
 - * 단체가 자율적으로 비전·목표·전략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컨설팅 지원
- 지역 공연장(문예회관), 전시관에 민간단체가 장기간 상주하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 * 지역 소재 민간 공연단체에게 상주공간(무대, 연습실 등)을 제공하여, 작품 제작, 발표 및 레퍼토리화 유도(최소 2년 지원, 성과평가로 연속지원 여부 결정)

06 지역문화분권 실현

의제

- 배경
- 지역의 문화는 주민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 가는 것이 기본 원리
 -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민주주의 실천방안 모색

01 |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 · 발전

◀ (문화도시 조성)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

- ‘19~’30년까지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50여개 문화도시 지정(광역 및 기초 지자체 대상)
 - * 문화도시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
- 문화적 장소, 문화 콘텐츠, 문화전문인력 통합 지원을 통한 도시문화 활성화 지원
- 지자체-시민-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문화도시 간 협력체계 활성화

◀ (관광도시 육성) 도시의 다양한 정체성을 살린 관광 매력도시 육성

- 관광잠재력 있는 도시를 선정, 서울·제주를 대체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매력도와 관광 인프라 갖춘 ‘관광매력 거점도시’로 육성
 - * 주요 교통거점(공항 및 KTX 인근), 광역개발 중심지 등 권역별 핵심도시 선정(도시브랜드에 부합되는 관광체계 구축 → 관광매력도 제고 → 국내외 관광객 유입)
- ‘관광매력 거점도시’를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 추진
 - * 도시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설계, 도시브랜드 위원회 설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조성 등

◀ (지역콘텐츠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

- 지역 내에 콘텐츠 기업육성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창업 활성화 · 기업육성 지원
 -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8년 10개), 지역거점형 기업육성센터(‘18년 4개 예정)를 장기적으로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로 확산
-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콘텐츠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콘텐츠펀드’를 신설하고 지역콘텐츠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지역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콘텐츠 육성 지원
 - * 지역의 핵심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문화자원 등과 결합한 지역별 핵심 콘텐츠를 개발

02 |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 조성

◀ (인력 양성)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 · 활동 지원

- 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지원하여 지역 청년문화 활동가·문화관련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기관, 단체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확대를 통해 전문인력을 문화시설에 배치함으로써 문화매개자 교육과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 청년들이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청년 일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추진
 - 청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화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 * 문화청년 일만시간 과정 : 준비-진입-활동-정착-재도약-재충전



◀ (기관 혁신) 지역 문화기관 위상과 역할 재정립

-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 전문성 · 독립성 · 자율성 강화

주요 방향

- ▶ 지역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과 투명한 운영
- ▶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 ▶ 현장 소통 강화와 협치를 통해 민관 매개 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 문화기관의 특성을 인정하는 출자 · 출연기관 운영 및 평가 개선

◀ (정책기반 구축) 지역문화진흥 관련 정책수립·집행을 위한 문화정책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조사 · 연구 · 개발 · 집행을 위한 문화정책 전담기관 지정
- 지역문화 관련 조사 결과와 통계 관리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조사 · 연구 · 개발 지원을 위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 (재원 확충)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지속적 확충(관계부처 협의)

- 지역별 문화진흥 투자에 필요한 예산의 정부지원 확대
- 지역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재원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의무화 및 운영 지원
* 포괄보조금 등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재원대책 적극 강구
- '지속적인 지역문화 재원 확충 방안' 관련 연구 추진

◀ (정보 공유) 지역문화 정보체계 구축

- 지역문화정보와 생활문화·여가공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 현황 등을 기반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한 지역별 문화지도 구축·제공
- 전국단위 관광발전 동향을 분석하여 지역 관광사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관광발전지수를 측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지역관광발전지수(종합지수)는 관광수용력·관광소비력·관광정책역량지수 등 21개 항목의 지수값을 산출하여 지역관광발전 수준 측정

03 |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계기 제공

◀ (주민 창업) 지역 주민사업체 창업 활성화 지원

- 지역 '관광두레' 창업. 운영 활성화로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 ('18년 300개 → '30년 2,000개 / 누적)
* 숙박 · 식음 · 체험 등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도록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 (스포츠클럽 운영) 지역 공동체 확산을 위한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 종목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와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의 통합 운영 추진
* 농구 예시(안) : 대한농구협회가 학교스포츠 농구클럽, 지역스포츠클럽 농구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리그 기획, 시도 농구협회는 리그운영 및 시설 지원
- 지역 체육인 ·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스포츠클럽 운영 장려
* 스포츠클럽 공모 참가자격 확대 및 우대(가점 부여)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 검토
- 지역 중심의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운영(심판, 시설, 운영요원 등) 지원 확대
* 스포츠클럽과 문화예술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청소년 축제로 개발

◀ (협치 조직)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법개정을 통해 중앙 및 광역 ·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 · 강화

◀ (예산 참여) 주민참여 문화예산 제도 지원 (관계부처 협의)

-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 기관 및 시설/공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예산 요구
- 매년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단은 해당 지역 문화예술 현장을 대상으로 사업 및 예산 설명회 개최

04 | 중앙과 지방 간 협치모델 설계

◀ (문화예술 협치) 지역문화, 예술분야 협력체계 구축

- 예술위원회, 예술지원기구, 광역·기초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
-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기반 마련

◀ (관광 협치)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할 한국형 DMO* 설립 지원

* 지역마케팅조직(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 특정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연계된 조직을 통해 민·관·산·학 공동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상품개발, 홍보 등) 추진
 - * (역할예시) 지역 간 조직은 조정·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관광사업을 지속 관리, 지역 내 조직은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 * (사업예시) 지역데이터 수집·분석·제공, 주요 업적 평가지표 설정, 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사업추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공동 홍보 등

◀ (체육 협치) 스포츠클럽과 지자체·지역체육단체의 역할 정립

- (지방자치단체) 공공스포츠시설 배분, 예산 지원, 지역체육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시군구체육회) 스포츠클럽 운영 또는 운영 지원(지도자파견 등), (지역종목단체) 대회의 조직 및 운영,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등
- 비영리법인이 아닌 지역체육단체*도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허용하고 있으나, 지역체육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므로 공식성,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 우수 인력 지원(인건비 직접지원, 교육·연수 등 간접지원), 재정 자립 등 지역체육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콘텐츠 협치) 중앙과 지역, 지역 간,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

- 정부-지방정부-중앙 공공기관-지역진흥원이 참여하는 지역콘텐츠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이 주도하여 과제를 기획·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 지역콘텐츠 거점화·광역화를 통한 규모화를 도모하고, 연관 산업간 연계 및 지역 간 협업 유도



07

의제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배경

-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형성해온 문화자원*들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역동적인 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창출되어야 함

* 문화자원: 인간의 문화적 창조활동의 결과물로 예술, 콘텐츠, 문화유산, 문화경관 등을 망라



- 지식문화 창출을 위한 획기적 기획, 혁신적 도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창의적 역량을 확대

01 |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창의교육 일상화)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쉽게 창의교육에 접근

- 문화예술교육·콘텐츠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 (관계부처 협의)
- 아동·청소년 등이 창의적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하는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꿈꾸는 예술터’ 조성·운영 (‘30년 시도별 5개)
- 예술대학과 문화시설이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창의예술교육 랩’ 도입 추진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예관을 문화 체험·학습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메이커 스페이스)으로 기능 전환

◀ (창의융합공간 조성) 융합 연구·교육·시범프로젝트의 기반 마련

- 예술과 과학,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교육-창작 연구기반, ‘가칭) 융합예술 R&D 센터(AT센터)’ 설립 추진

* 한국예술종합학교, KAIST, 서울대학교, 예술·과학기관 등과 연계해 문화예술, 과학 및 공학, 인문 등이 결합하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 기획

- 기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분야의 진흥 기관과 교육 기관, 과학 기술 분야의 기관들 간 협력을 통해 기술과 문화 융합 촉진
 - * 가상현실, 로봇틱스, 인공 지능 등 첨단 기술의 연구 결과를 문화 콘텐츠와 융합하는 데에 특화된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기획
- 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 기업 등*이 서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면서 융합적 관점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하는 ‘콘텐츠 원캠퍼스’ 확대
 - * 지역콘텐츠진흥원, 해외 관련 기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업 체계 구축
- 스포츠 공학, 스포츠 의학 등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02 | 문화자원과 신기술 융합 촉진

◀ (콘텐츠 융합) 체감형 기술을 통해 아날로그 경험의 확장 지원

- 기술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창의적 창작물이 관객,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문화공간 · 매개기반 조성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 인공 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융합콘텐츠 개발 추진
 - * 뉴콘텐츠 종합지원센터, AR, VR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교실 보급 확대, 콘텐츠 맞춤형 금융지원 및 융자 자원 조성

◀ (관광 융합) 스마트 기기 기반 관광서비스 발굴

- 다양한 개인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문화자원 융합형 관광콘텐츠를 스마트 기기 기반의 개인화 관광서비스와 연계하여 개발
 - * (예시) 걷기 활동에 자연환경, 역사, 종교, 건축 등 문화자원이 보유한 다양한 인문적 내러티브를 결합한 ‘문화예술 따라서 걷기’, ‘역사 따라서 걷기’, ‘종교 따라서 걷기’ 등의 사업 개발
- 여행 관련 장소, 교통, 결제시스템 등 관광 상품과 서비스가 연계되는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추진

- 관광 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빅데이터 활용 국내외 관광객 행태와 특성 모니터링 등 개인화 관광서비스 활성화 기술 지원
- 공유민박업 도입 등 새로운 융합형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기술력·유통망을 갖춘 관광플랫폼 기업과 관광콘텐츠 기업 간 협업 지원

◀ (스포츠 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 발굴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훈련 및 맞춤형 운동관리, 실감형 스포츠 콘텐츠 발굴, 선수·경기데이터 실시간 제공 관람 플랫폼 개발 지원 등

* 한국형 운동 신체 표준 지표 개발, 스포츠빅데이터센터 구축, 생활 밀착형 가상스포츠실 보급, 프로스포츠 전용 구장에 스마트 관람 플랫폼 구축 지원 등

-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분야*를 선정 기술개발(R&D)을 추진하고, 실내 가상스포츠, 드론·로봇 스포츠 등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 발굴 및 리그 활성화 지원

* 스마트 운동관리, 가상스포츠, 스포츠 데이터 분석, 스포츠 중계기술, 스포츠 관람서비스 등

03 | 문화자원 관련 산업의 융합 기반 조성

◀ (문화R&D 강화)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 '17년 기준 문체부 R&D 사업 예산은 75,259백만원으로 국가 전체 R&D 예산의 0.4% 수준

- 문화 R&D 개념 정의를 다양한 문화 및 관련 산업, 융합분야까지 넓히고, 기획 및 창작 (P&P: Planning & Production) 단계까지 연구개발 범위에 포함

* 문화자원은 기획 및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수요가 발굴되는 경우가 대부분

- 문화 R&D 투자 확대*, 콘텐츠 창작-제작-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기술적 활용 능력을 확보, 고부가가치 콘텐츠 창출 역량 강화

* '17년 기준 문체부 R&D 사업 예산은 75,259백만원으로 국가 전체 R&D 예산의 0.4% 수준

- 산업간 융합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콘텐츠+기기+플랫폼, 예술+기술, 미디어+예술, 게임+예술, 게임+관광, 게임+스포츠 등

◀ (창업 지원) 문화자원 융합 혁신 기업 육성

-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 창작자·창업자 대상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융합 및 창작·제작 시설, 입주공간 등 지원 위한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광화문) 운영,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 창작-창업초기-육성·성장-도약·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
- 혁신 관광벤처기업 육성('18년 540개 → '30년 2,000개 / 누적), 관광 창업·일자리·기업지원 종합 지원체계 구축*
 - * (중앙 거점) 관광공사 서울센터 활용, 관광벤처보육센터 및 관광일자리센터 운영(지역 거점) 지역 관광일자리 및 관광산업 지원 공간 구축 검토
- 기업-지자체(지역거점센터)-대학·연구기관(스포츠산업지원센터)으로 구성된 기능 중심 산업혁신 클러스터*와 '스포츠 창업 여건**' 조성(스포츠 유망기업 '18년 10개 → '30년 50개 육성)
 - * 지역거점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중앙정부 주체 간 공동기획·연구, 정책 지원 등의 협력 관계망을 구성·운영하는 클러스터 형태
 - ** 시제품 제작실, 창업 아이템 체험 존, 창업 교육·강의실, 마케팅 지원 등

04 | 문화자원의 기록·보존 체계 강화

◀ (아카이브 확대) 문화자원 기록 및 보존·활용 체계 개선

- 국공립 및 민간 문화기관 등의 아카이빙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
 - * 문화기획자, 연구자, 창작자들의 아카이브 활용 편의 제고
-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주에 관한 자료, 유무형 문화재, 각종 문화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 * 웹툰 원문자료를 모은 '웹툰 아카이브', 고전 게임 등을 수집하여 연구·전시·체험할 수 있는 '게임 라키비움'(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리(Archive), 박물관(Museum)의 합성어)
 - * 수집된 콘텐츠는 핵심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으로서 관리·활용을 강화하여, 향후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 유도

◀ (한글 활용) 한글문화 자원의 발굴과 가치 확산

- 한글 기반 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로 한자 기반 문화자원 중심에서 탈피
 - * 근현대 한글문화 자원 연구 및 기획 전시, 한글문화 관련 인물과 사건 중심의 자료 조사
- 다양한 한글문화 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로 한글문화의 가치 확산
 - *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감성형 한글 체험관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국어 어휘역사 사전 편찬으로 우리말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완성

05 | 문화자원 융합 역량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기준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재규정

*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및 융합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에 대해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재규정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신규인력 채용평가 기준, 업무능력 평가 기준 등과 연결하여 활용

◀ (세제 지원) 문화 분야 세제 등 지원제도 개선 추진

- 현재 제조업 기술, 연구소 중심으로 규정된 조세제한특례법상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범위에 문화예술, 콘텐츠분야도 포함되도록 추진

* 실제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구입비, 외주 작가비, 원천 콘텐츠(LP) 구입비에 대해 세액 공제 확대 추진

- 중소 관광업체, 문화 및 체육 분야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관광사업체의 외국인력 고용 특례 제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 다양화, 소규모 관광사업체 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 검토



0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의제

배경



- 남북한 문화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문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제문화교류 협력의 이정표 제시
- 문화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상상,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문화상호주의 인식 확대. 문화를 통해 적극적 교류협력, 글로벌 문화산업 시장진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전환점 마련

01 | 문화·체육·관광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 획기적 전환 (관계부처협의)

◀ (제도 구축) 지속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 마련

-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백서」 발간 및 사업추진 매뉴얼 마련
- 남북 문화교류의 안정화·제도화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정' 체결
-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교류 지원 및 협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가칭)「남북문화교류협력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남북 문화교류협력진흥원(위원회) 설립

◀ (교류 활성화) 남북 문화·예술·체육·관광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

- 남북문화유산 공동실태조사 및 남북 종교지도자 정례회의 추진
- 예술·영화 등 분야별 교류사업 확대 및 계기별 기념사업 공동추진
- 국제대회를 발판으로 공동개최, 공동진출 등 체육교류 확대
- 남북 관광 협력 사업 개발

◀ (동질성 회복) 남북 문화 동질성 회복 프로젝트 추진

- 북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협력 확대
-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언어 실태 연구 및 학술 교류 확대
* 거례말큰사전 공동 편찬, 어문규범·전문용어 통합 방안 연구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 등
- 청소년 등 미래통일세대를 위한 문화동질성 회복 프로그램 개발
* 통일문화아카데미 운영, 남북 청소년 평화문화프로그램, DMZ 평화문화캠프, 남북 생활(여가)문화 체험 공간 조성 등

02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 (한류 확산) 문화콘텐츠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분야에 대해 해외의 반응을 분석하는 ‘한류 빅데이터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콘텐츠진흥원, KOTRA, 문화원 등 통합적 ·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관계부처 협의)
- 국제문화교류 전문 에이전트 등 교류협력 전문인력 양성
- 장르별 국제 박람회(마켓·페어) 성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협력

◀ (조직역량 강화) 해외문화원을 ‘문화예술교류’전진기지로 개편

-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콘텐츠 협력 시스템 구축
- 해외문화원 운영 · 사업 예산 및 전문인력 파견 확대
- 주재국의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 확대 및 조사 · 연구기능 강화
- 권역별 차별화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상승효과 제고

03 | 지원과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 (쌍방향 교류) 문화예술인 · 청소년 · 청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 문화동반자 등 해외 인력 초청 및 국내 문화인력 해외 파견 확대, 해외예술가 레지던시, 공동 창작 등 협력 프로그램 확대
-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해외 청소년 문화통신원 양성, 해외 청소년 방한 수학 여행단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 해외 문화 트렌드를 경험하고 교류하는 청소년 문화사절단 운영,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에 청년인턴 파견 추진(관계부처 협의)

◀ (지원 확대)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적극적 추진

- 전체 ODA 예산중 문화영역 ODA 비율 확대 추진('18년 현재 0.4%)
- 신규 지역(국가)의 현지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확대
- 현지 문화 분야 수요 및 환경에 부합하는 기반 구축 지원
- 국제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 '드림 프로그램*' 확대 추진
* 동계스포츠 불모지 국가의 선수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초청 프로그램

04 |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

◀ (문화 협력) 아시아에 기반한 문화교류 협력사업 확대

- 한·중·일 공동 추진 문화 사업 · 문화 축제 발굴
-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아세안 문화도시 간 교류 및 역량 강화
-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을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활성화
- 한·중, 한·일, 한·아세안 문화포럼 확대 추진

◀ (관광 협력) 동아시아 자유관광 기반 조성 추진

- 한중일 교통패스, 관광멤버십 등으로 역내 국가 간 관광 활성화
- 공동 홍보,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



09

의제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배경



- 우리 사회 구성원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는 삶, 즉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이끌어 냄
- 문화정책이 미래 변동, 사회혁신 의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 ‘문화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운 문화정책의 지평을 넓혀야 함

01 |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 (여건 조성)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 개선 정책「문화로 바꾸는 삶」추진

-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고유문화에 기반 하여 사회 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안을 찾고 지역 주민 간 자발적 소통 원활하도록 여건을 조성
*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지방소멸, 세대 갈등, 가족해체, 1인 가구의 증가 등
- 지역의 문화기관·문화기획자·예술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대학구성원·기업·비영리단체 등의 협업여건 조성*
* 예시) 네트워킹 공간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관련된 문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타 부처 정책수단과의 연계 지원
* 문화예술교육,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농촌재생과 연계

◀ (문화지구 개념 확장) 일터와 삶터가 결합된 ‘문화지대’ 조성 검토

- 「지역문화진흥법」상의 문화지구를 일자리 개념까지 포함하여 확대
-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문화 일자리 공간과 생활공간이 결합된 문화지대를 조성하고 예술가와 문화소상공인 유치 지원
* 예시) 창작공간, 소규모 가게·소규모 사무복합공간의 복합용도 개발
- 창업·창작지원·유통·교육 등 관련 문화정책·사업을 망라하여 통합적으로 기획할 지역 내 중간조직 육성
- 문화지대 조성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관계부처 협의)
* 단기 임차료 안정화 정책(short-term rent stabilization), 가치에 따라 재산세에 변동성을 주는 정책(sliding scale for property taxes), 소득세 세액 공제 등

◀ (인재 양성) 프로젝트 기반 형 대학원 수준 '혁신학교' 설립 (관계부처 협의)

- 문화적 지역재생, 마을공동체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문화적 사회혁신 관련 주제를 학습 · 연구 · 적용하는 기회 제공
- * 중앙. 지자체 공무원, 지역문화지원기관 종사자, 문화기획자, 예술인 등을 대상

02 | 공공 문화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 (상향식 일자리 창출) 공동체형 문화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원
- * 문화관광해설사, 생활체육 지도자, 예술강사 등
- 지역 단위에서 창의적인 공동체형* 일자리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공동체형 사회문화적 일자리 확대
- * 관광두레, 예술마을두레, 생활체육두레 등

◀ (일자리 창출 기반)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정책대응

- 신 직업 발굴, 신 직업 관련 진로지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 프리랜서형 근로방식 등 문화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관련 법제도 적용범위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공(관계부처 협조)
- * 주요국은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 축인 프리랜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회적 인식변화, 법제도적 규정, 정책적 지원을 확대
- 문화 · 체육 · 관광분야 인력 활동 조사체계 일자리 현황 파악, 일자리 안정 및 근로환경 기준 정보 생산 활동

03 |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의한 지역 · 공간 재생

◀ (공유지) 지역 주민 주도로 문화적 활용계획 마련 및 운영

- 지역민·예술인·각 분야 전문가 간 관계망(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역재생 사업 이전단계부터 문화적 교류 기회 제공
 - 관계망을 활용 다양한 문화적 도시재생 기획 · 실행그룹을 발굴하고 공유지의 문화적 활용방안 수립과 운영에 일정 역할 부여
- * 문체부는「지역문화진흥법」 문화지구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주도 문화재생 실행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환경조성(관계부처 협의)

◀ (유휴자산) 문화적 활용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민 역할 확대 (관계부처 협의)

- 도로 · 군부대 · 폐교 등 국유지의 문화적 활용에 대한 민간참여 제도 마련
- 빈집, 빈상가, 폐산업시설, 개발중단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 공개

04 | 기후변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 (관계부처 협의)

◀ (전분야) 환경·에너지·생태 중심 문화적 전환도시 계획 도입

- 도보 친화적인 무동력 교통체계 · 생태 친화기술 중심으로 특화된 문화지구, 문화공단, 관광단지 등을 집약한 도시 전환모델 제시
-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자급자족형 에너지 전환을 위한 문화캠페인
- 환경·에너지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 (문화 분야) 문화시설 및 행사에 에너지 전환 개념 도입

- 문화시설*에 대한 환경 · 에너지 현황 조사하고 탄소발자국 표시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저감 목표와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 *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 공공 지원 지역 축제 · 경기 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시 환경 · 에너지 중심의 전환계획 포함 의무화

05 |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 (범부처 협력) 사회부처 중심으로 협력체계 강화 (관계부처 협의)

- ‘사회문화부총리제도’ 도입으로 부처 간 협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융합형 부처간 협업모델 확대
* 도시 재생, 혁신도시 시즌2와 문화도시, 창의성 교육, 공공디자인 등

◀ (민관 협력) 의제 발굴 및 실행 협력 체계 구축

- (가칭)“문화와 사회혁신 포럼”을 구성하여 문화적 사회혁신 방안 기획
* 전문가/시민 심층인터뷰, 소셜 픽션, 연구, 컨설팅
- 민관협력을 기획·조율하는 문화기반 사회혁신 중간조직 육성

◀ (정책의 문화화) 문화영향평가의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평가대상 확대 및 구체화, 평가결과 환류 체계 마련 등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지표의 지속적 개선, 계량적 평가 도구 개발 등 평가의 체계성 확보 및 자체평가 도구 개발, 우수성과 발굴 등 평가의 사회적 확산 도모

사람

이 있는

문화

05 실행력 제고 방안

기본방향



-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진흥육성'에서 민간 현장 중심의 자율적 '지원 조성' 체계로 전환

문화행정 혁신

◀ (참여행정) 상시적인 통합 정책 협의체계 마련 및 참여 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관계망 운영 활성화(정책 패널제도, 소위원회 등) 등 참여적 문화행정제도 개발 추진
-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가칭)문화비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 (법률 제개정) 변화된 사회 환경과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 헌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개인의 문화권을 반영
- 문화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

행정주체별 역할 재정립

◀ (문체부) 기획·조정 역량 강화

- 국정 운영의 문화적 가치 확산, 국가 단위 문화정책 기획·조정, 문화사업 관련 부처간 협력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
*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 평가, 조정,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
- 전국 단위 지역문화 연계, 국제 문화 교류, 문화 기술개발(R&D) 등으로 확장

◀ (지자체, 공공기관) 자율성 · 전문성 제고

-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등 실제 사업의 추진단위는 관련 지자체나 산하기관이 수행
-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수평적, 효율적인 업무협력구조 정착

▶ 재정 운용 방향 확립

◀ (삶의 질 향상에 투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

- 국민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체감형 문화정책에 우선 투자
-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의 편의와 선택을 중시하는 서비스로 투자 방향 전환
- 선택·집중이 필요한 분야(탁월성, 전문성)와 소액다건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양성, 보편성) 등으로 사업 대상 분류

*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사업의 전달(보조사업자) 원칙 마련

◀ (평가 강화) 문화재정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류체계 구축

- 사전심사 강화, 성과평가 시행 등 재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업추진 및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성과 평가 및 컨설팅 기능 확대

※ 예산 · 조직 · 인사 · 법제 등 수반과제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조정 변경 될 수 있음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